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방송분야 Q&A

<고용보험 적용>

Q 기자 또는 의사 등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방송에 출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인지?

A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근로자가 아니면서”는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7항에서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이면서 해당 사업에서 예술인인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일반인출연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인출연자 중 예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고정출연자*에 대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일반인출연자: ①방송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②연예인(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고정출연자: 방송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담당하는 등 일정정도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Q 연예인과 일반인 출연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인출연자는 ① 방송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② 연예인(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A 원칙적으로 일반인출연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인출연자 중 방송활동을 업(業)으로 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고정출연자*에 대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고정출연자: 방송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담당하는 등 일정정도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Q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내 국적의 해외
통신원에 대한 취득신고 대상 여부는?

A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거주 장소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
내사업장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
험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통신원 등의 경우에
는 일반인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계약관계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제2조제4항에 의하면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F-6 가]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
는 사람[F-6 나]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F-2 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F-4]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F-5]

Q 하나의 사업주와 여러 건의 출연계약을 한 경우 적용대상 소득은 건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계약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A 하나의 사업주와 여러 건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월평균보수 신고>

Q 음악 프로그램에 팀으로 출연하는 가수의 경우 개인별 정산 내역을 방송사는 알지 못하는데 이 경우 개인별 월평균보수 신고 방법은?

A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팀 내 개인별 보수는 매니지먼트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매니지먼트사 등을 통해 팀원별 수익배분비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수익의 분배 등)에 따라 지급된 보수를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누어 신고하여야 할 것임

Q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방송사와 3자계약(방송사, 매니지먼트사, 예술인)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은?

A 소속사 소속 예술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산정대상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에서 필요경비(20%)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소속사의 수익배분비율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는 계약 시에 파악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서면계약이 없어 인적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인적사항까지 제공을

거부한다면 공단을 통하여 보험료 성실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Q 방송프로그램을 연출하는 PD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한 구두 약속 등으로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의 출연한 연예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은?

A 단순 친분관계에 의한 일회적 출연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구두계약으로서 출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출연료 지급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회차별로 지급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결방도 있을 수 있어서 보수지급액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 방법은?

A 일반예술인의 경우는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신고하시고 해당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신 다음,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상실을 하면서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신고기한이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이므로 다음 달에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Q 사업주와 예술인 간 '21.3.1.~7.31.(5개월), 계약금액 300만원
상실신고서 상의 보수총액 450만원인 경우 일반예술인의 경우
원천공제 및 정산보험료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A

① 월별보험료
 월평균보수: (300만원-60만원)/5개월=48만원으로
 기준보수 80만원 적용대상
 80만원*5개월*1.6%=64,000원 납부

② 정산보험료(차액 없음)
 -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총액(450만원)
 - 신고한 보수총액이 기준보수를 적용한 보수총액 400만원을
 초과하므로 450만원 적용

◎ 사업주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액(8,000원)=
 (72,000원= 450만원×1.6%) - (납부한 보험료 64,000원)

◎ 예술인 (지급되는 보수에서 0.8%를 사업주가 원천공제)
 (정산보험료 72,000원 × 50%) - (예술인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한 보험료 합계액)

Q 계약기간 '21. 1. 8. ~ 1. 20., 회당 10만원 지급, 4회 출연하
고 총 40만원을 지급받은 단기예술인의 경우 원천공제방법은?

A

☞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자)은 기준보수 미적용,
 실제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원천공제

☞ (원천공제액) 출연회당 640원 원천공제(10만원 × 0.8필요경
 비20% × 0.8%), 4회 출연 시 공제총액 2,560원(40만원 ×
 0.8 × 0.8%)을 예술인 보수에서 공제

☞ (신고방법) 2월 15일까지 전월 지급한 보수총액 32만원으로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